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정 2000. 11. 20.
전문개정 2007. 9. 1.
개정 2007. 12. 4.
개정 2008. 12. 29.
개정 2010. 10. 4.
개정 2014. 9. 12.
개정 2020. 11. 24.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함) 회계규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150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요청서'라 함은 계약담당자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3.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개정 2020. 11. 24.)
4. (삭제 2020. 11. 24.)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평가원 시행규칙 제150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적용한다.

제4조(입찰공고) ① 입찰공고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경우 및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20. 11. 24.)

②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2. 해당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개정 2020. 11. 24.)
3.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4.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그 장소·일시에 관한 사항(개정 2020. 11. 24.)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6. 제안서의 제출기간
7. 제안서의 내용
8.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제7조제2항에 따라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 등)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제안요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을 생략하고, 바로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11. 24.)

④ 전항에 의한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은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24.)

⑤ 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
2. 요구사항
3. 계약조건
4.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5. 제안서의 규격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제안서 등의 제출) ①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24.)

②입찰참가자의 가격입찰서는 모두를 함께 밀봉하여 제7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개봉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2)

제7조(제안서의 평가) ①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다.

②제안서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③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까지 보완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제1항에 따라 제안서의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사업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또는 평가원 소속직원(사업주관 부서 제외)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평가위원의 과반수는 외부전문가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2010.10.4, 2014.9.12)

⑦사업주관부서장과 계약부서장은 위촉하고자 하는 위원 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 후보자를 감사실장에게 각각 추천한다. 다만, 추천자 중 과반수는 외부전문가여야 한다. (신설 2014.9.12)

⑧감사실장은 추천된 평가위원 후보자를 내·외부위원으로 구분하여 추첨·선정하

고, 원장은 선정된 자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한다. (신설 2014.9.12)

⑨평가결과는 위 제2항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 중 최고 점수 및 최저점으로 평가한 각 1인의 평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의 합산 평균으로 산출한다.(개정2008.12.29, 2010.10.4.)

⑩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⑪계약담당자는 제5항에 따른 제안서의 기술능력 평가가 종료된 후 지체없이 입찰가격 평가일시를 확정하여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24.)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개정 2007.12.4.)

②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개정 2007.12.4., 2020. 11. 24.)

제9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와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협상절차)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11. 24.)

②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1조(협상내용과 범위) 협상은 기술협상과 가격협상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기술부문에 관해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2. 가격협상

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으로 하되, 별도의 예정가격을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제출 전까지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의 제안가격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0. 11. 24.)

나.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 같음)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되 제안가격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사업예산(예정가격)으로 한다.(개정 2020. 11. 24.)

다. 기술협상 결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0. 11. 24.)

제12조(협상기간) (삭제 2020. 11. 24.)① 협상기간과 대상 등을 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24.)

②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신설 2020. 11. 24.)

제13조(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 및 다른 협상적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24.)

제14조(계약체결 및 이행) ①협상이 성립되면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통보한 협상결과와 평가원의 규정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7조 관련)(개정 2020. 11. 24.)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지식능력 ○ 인력·조직·관리기술 ○ 사업수행계획 ○ 지원기술·사후관리 ○ 수행실적 ○ 재무구조·경영상태 ○ 상호협력 등 	80	○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입찰가격 평가		20	※ 평점산식: 아래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circ \text{평점} = \text{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left(\frac{\text{최저입찰가격}}{\text{해당입찰가격}} \right)$$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circ \text{평점} = \text{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left(\frac{\text{최저입찰가격}}{\text{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left[2 \times \left(\frac{\text{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text{해당입찰가격}}{\text{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text{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right) \right]$$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주2)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 최저평점(배점의 70%)과 최고평점(배점의 100%) 이내에서, 배점비율 및 평점구간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1호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

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